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9월 10일

발 의 자 : 이광성, 김용석, 장상기, 김정환,
김경영, 이광호, 문장길, 문영민,
최정순, 김생환, 김제리, 송명화,
김기덕, 유정희, 송정빈, 김태수,
황인구, 경만선, 김광수, 박상구
의원(20명)

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가.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25조제2항)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등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함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30명이내”를 “30명 이내”로 하고,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호 중 “하절기”를 “여름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동절기”를 “겨울철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시설에”를 “다음 각 호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
2. 주택형 태양광 설비
3. 건물형 태양광 설비
4. 그 밖의 시장이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시민단체·종교계·경제계·학계·교육계·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인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19조(온도관리기준)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(이하 "온도관리기준"이라 한다)과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하절기(6월~9월) : 냉방온도 26℃ 이상</p> <p>2. 동절기(11월~3월) : 난방온도 20℃ 이하</p> <p>제25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상의 조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·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사업자·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의 제공이나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12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30명 이내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2명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온도관리기준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여름철 -----</p> <p>---</p> <p>2. 겨울철 -----</p> <p>---</p> <p>제25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상의 조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다음 각 호에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베란다형 태양광 설비</u></p> <p>2. <u>주택형 태양광 설비</u></p> <p>3. <u>건물형 태양광 설비</u></p> <p>4. <u>그 밖의 시장이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</u></p>